

법원 공보

2025. 11. 01.
제 1723 호



법원행정처

목차

- 예규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건에 관한 공탁사무처리지침 | 1385
- 신법령 목록 | 1394

예규

◎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건에 관한 공탁사무처리지침

(대법원행정예규 제1447호 2025. 10. 21. 결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 결정이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공탁신청, 공탁물의 지급청구 및 열람 등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건”이란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사건을 말한다.
2. “본안사건법원”이란 해당 소송이 종료될 당시의 법원을 말한다.
3. “개인정보 보호조치 대상자”란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사건의 제한신청인을 말한다.
4. “개인정보 보호조치 취소결정”이란 「민사소송법」 제163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3조제2항의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말한다.
5. “관련사건”이란 공탁신청 또는 공탁물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제3조(「공탁규칙」의 준용) 제2장 및 제3장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탁신청 및 공탁물 지급절차에 관해서는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2장 변제공탁

제4조(관할공탁소) ①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건의 판결 등에 기한 변제공탁(이하 “개인정보 보호 변제공탁”이라 한다)은 본안사건법원 소재지의 관할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 보호 변제공탁은 피공탁자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대상자로서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성명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공탁서의 기재) ① 공탁자는 규칙 제20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공탁서의 피공탁자 주소란에 본안사건 법원 및 그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법령조항란에는 「민법」 제487조를 기재한다.

③ 공탁원인사실란에는 일반적인 공탁원인사실 이외에 관련사건이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건인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첨부서면 등) ①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제1호 양식의 공탁통지서를 첨부하고, 규칙 제23조제2항의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공탁자는 제5조제3항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건의 재판서·조서 등(이하 “재판서 등”이라 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탁서에 첨부되는 재판서 등은 규칙 제21조제3항의 서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공탁통지서의 발송) ① 공탁관은 공탁물의 납입 또는 공탁물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제6조제1항의 공탁통지서와 별지를 피공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탁통지서의 발송은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건의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된 피공탁자의 주소지로 할 수 있다.

제8조(공탁물 지급) 개인정보 보호 변제공탁의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규칙 제33조에 따른 서면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피공탁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건 재판서 등의 정본 또는 등본
2.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제9조(변제공탁 이외의 공탁에 준용) 개인정보 보호조치 대상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 이외의 공탁신청 및 공탁물의 지급청구에 관해서는 제5조제1항·제3항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3장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제10조(공탁신청) ①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에 의하여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공탁신청 시 가압류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가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한다.

② 제3채무자는 제1항의 가압류결정문상 채권자의 주소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 사실통지를 위한 규칙 제23조제2항의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③ 공탁관은 제1항의 가압류결정문상 채권자의 주소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건의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된 가압류채권자의 주소지를 조회하여 공탁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공탁사실의 통지는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의 별지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11조(혼합공탁의 신청 시 준용)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사유와 가압류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혼합공탁하려는 경우에 그 가압류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건인 경우의 처리에 관해서도 제10조를 준용한다.

제4장 열람제한 등

제12조(열람제한신청) ① 공탁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련사건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대상자인 경우에는 공탁관계 서류 가운데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특정하여 열람의 제한을 신청(이하 “열람제한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열람제한신청이 가능한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소
2.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4. 팩시밀리번호
5. 전자우편주소

③ 열람제한신청을 할 때에는 공탁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이하 “열람제한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자격
2. 열람제한신청의 취지
3. 공탁소, 공탁사건번호, 공탁자, 피공탁자
4. 제한신청 대상문서의 표시(예시: ○○○○. ○○. ○○.자 공탁금 출급청구신청서)
5. 제한신청 대상정보

④ 제3항의 열람제한신청서 제출 시 관련사건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있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은 자격자대리인 본인이 열람제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열람제한신청의 처리) 공탁관이 열람제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조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열람제한의 승인) ① 공탁관이 열람제한신청을 승인할 때에는 열람제한신청서에 신청을 승인한다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다.

② 제1항의 승인이 있는 경우 기록표지 우측 여백에 별표의 붉은 색 고무인을 찍고 제한신청 승인 내용을 신청인에게 고지한다.

③ 제2항의 고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열람제한신청서는 공탁관계 서류에 편철한다.

⑤ 공탁관은 열람제한신청을 승인한 사건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공탁사건인 경우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공탁기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열람제한의 방법) ① 열람제한신청의 승인이 있는 경우 제한신청 대상문서의 제한신청 정보 부분을 접착식 테이프로 가리는 방식으로 해당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대한 보호조치를 한다.

② 열람제한신청이 승인된 공탁관계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1항의 보호조치 한 서류의 사본을 공탁관계 서류의 해당 부분에 편철하여 열람 등에 제공한다.

③ 제14조제1항의 서면과 그 첨부서류에 대한 열람·복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2항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제16조(열람제한의 취소신청) ① 공탁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관련사건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 열람제한의 취소를 신청(이하 “열람제한 취소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열람제한 취소신청을 할 때에는 공탁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이하 “열람제한 취소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자격
2. 열람제한 취소신청의 취지
3. 공탁소, 공탁사건번호, 공탁자, 피공탁자
4. 제한취소신청 대상문서의 표시(예시: ○○○○. ○○. ○○.자 공탁금 출급청구신청서)
5. 제한취소신청 대상정보

③ 제2항의 열람제한 취소신청서 제출 시에는 관련사건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취소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은 열람제한 취소신청에 준용한다.

제17조(열람제한 취소신청의 처리) 공탁관이 열람제한 취소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열람제한 취소의 승인) ① 공탁관이 열람제한의 취소신청을 승인할 때에는 열람제한 취소신청서에 신청을 승인한다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다.

② 제1항의 승인이 있는 경우 제14조제2항의 고무인 하단에 열람제한 취소의 승인 연월일, 취소의 취지를 기재하고 제한 취소신청 승인 내용을 신청인에게 고지한다.

③ 제2항의 고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열람제한 취소신청서는 공탁관계 서류에 편철한다.

제19조(열람제한 취소 처리의 방법) 열람제한 취소신청의 승인이 있는 경우 제한취소신청 대상문서의 접착식 테이프를 제거하고 통상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열람·복사 사무를 처리한다.

제20조(불수리 결정) 공탁관이 제12조 또는 제16조의 각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는 규칙 제48조에 따른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 표]

개인정보 보호조치로 인한 열람제한	
제한 당사자	
대상문서	
대상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기타	
(날짜)	인

[제1호 양식]

금전 공탁통지서

공탁번호		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공탁자	성명 (상호, 명칭)		피공탁자	성명			
	주소 (본점, 주사무소)			주소			
공탁금액		한글 숫자	보관은행		은행지점		
공탁원인 사실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대리인 주소			
공탁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1. 위 공탁금이 년 월 일 납입되었으므로 [별지] 공탁금(유가증권) 출급청구 안내문의 구비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우리 법원 공탁소에 출석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거나 공탁을 수락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우리 공탁소에 제출하기 전에는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공탁금 출급 청구시 구비 서류 등 ※ [별지] 공탁금(유가증권) 출급청구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금은 그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 내에 출급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소멸시효 중단 등)가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4. 공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때에 청구서에 이의유보 사유(예컨대 “손해배상금 중의 일부로 수령함” 등)를 표시하고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후에 다른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공탁통지서는 재발급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송							
법원		지원 공탁관		(인)			
		(문의 전화:		)			

[별지]

공탁금(유가증권) 출급청구 안내문

귀하가 피공탁자로 지정된 공탁금이 납입되어 있으므로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우리 법원 공탁소를 방문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 구비서류:

- ① 신분증, 주민등록표 초본(주소변동 내역 포함)
- ② 판결문 등의 정본 또는 등본(피공탁자 주소란 및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된 판결문 또는 조서로서 피공탁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③ 공탁금액이 1천만 원 초과 시 추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④ 공탁금액이 5천만 원 초과 시 추가: 공탁통지서 원본
- ⑤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반대급부 증명서면
- ⑥ 채권자 불확지 공탁 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다른 피공탁자의 동의서 또는 확정판결서 등)

2.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추가서류: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다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①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②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③ 만일 부모 중 1인이 청구 시 배우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친권불행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3. 구비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관공서 발급 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할공탁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방법원 또는 지원 공탁소(관할공탁소와 같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에서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행정예규 제1167호 참조).

5. 공탁금 출급청구서 양식은 우리 법원 공탁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대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2호 양식]

공탁기록 열람제한 · 취소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자 격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내용	☐ 열람제한신청 ☐ 열람제한 취소신청			
대상 기록	공탁법원, 공탁사건번호			
	공 탁 자		피공탁자	
대상 문서				
대상 정보	☐ 주소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 ☐ 팩시밀리번호 ☐ 전자우편주소			
비고 (첨부서류 등)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신청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고지일자	년 월 일			

■ 신법령 목록 (2025. 10. 1. ~ 2025. 10. 15.)

법률

법률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21090 (별권1)	2025. 10. 01.	2
법률제21066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140
법률제21067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	"	164
법률제21068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66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580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1090 (별권1)	2025. 10. 01.	169
대통령령제35802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81
대통령령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	184
대통령령제35804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	248
대통령령제3580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314
대통령령제35806호	성평등가족부 직제	"	"	321
대통령령제35807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337
대통령령제35808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	345
대통령령제35809호	지식재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	359
대통령령제35810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	379

대통령령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1090 (별권1)	2025. 10. 01.	412
대통령령제35812호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1092	2025. 10. 10.	2
대통령령제35813호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
대통령령제35814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6
대통령령제3581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
대통령령제35816호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

총리령

총리령제2054호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1090 (별권1)	2025. 10. 01.	468
총리령제2055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	"	506
총리령제2060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091	2025. 10. 02.	3
총리령제2054호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안 중 정정	21092	2025. 10. 10.	12
총리령제2055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 정정	"	"	13
총리령제35800호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취소	"	"	25
총리령제2060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21093	2025. 10. 13.	2

부령

보건복지부령제1128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090	2025. 10. 01.	3
외교부령제150호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
외교부령제151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
문화체육관광부령제613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5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090 (별권2)	2025. 10. 01.	2
교육부령제367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6
산업통상부령제1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제정령	"	"	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시행규칙	"	"	122
고용노동부령제45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	"	252
성평등가족부령제1호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	"	263
중소벤처기업부령제104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88
국방부령제1190호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 정령	"	"	323
해양수산부령제763호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 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	"	325
국토교통부령제15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091	2025. 10. 02.	9
문화체육관광부령제612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0

문화체육관광부령제614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091	2025. 10. 02.	11
문화체육관광부령제61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5
보건복지부령제1129호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7
해양수산부령제764호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	"	"	22
행정안전부령제585호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	"	"	55
성평등가족부령제2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6
외교부령제150호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	"	87
외교부령제152호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외교부령	21092	2025. 10. 10.	26
행정안전부령제580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	28
성평등가족부령제1호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중 정정	21093	2025. 10. 13.	3
교육부령제367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1095	2025. 10. 15.	2



2025. 11. 01. 제 1723 호
Supreme Court of Korea



9 772951 225009
ISSN 2951-2255